

지역별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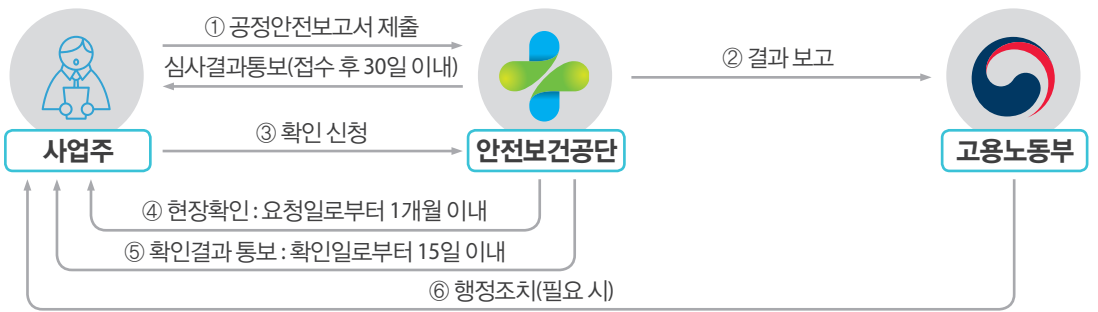


권역	화학사고예방센터	전화번호/팩스	소재지	관할지역
수도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시흥)	TEL. 031-364-7510~7 FAX. 031-494-9076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우) 15079	서울, 인천, 경기
경남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울산)	TEL. 052-228-5840~8 FAX. 052-228-5849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4길 51 (우) 44988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화학사고예방센터 (구미)	TEL. 054-459-1150~4 FAX. 054-459-115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우) 39161	대구, 경북
전남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여수)	TEL. 061-690-1660~5 FAX. 061-690-1666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우) 59615	광주, 전남, 제주
전북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익산)	TEL. 063-839-5260~3 FAX. 063-839-5259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87 (우) 54526	전북
충남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서산)	TEL. 041-661-5841~8 FAX. 041-661-5859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우) 31906	대전, 세종, 충남
충북권	화학사고예방센터 (충주)	TEL. 043-870-5960,2,5 FAX. 043-857-2490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우) 27477	충북, 강원

심사 및 확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제3항~제6항



공동(순차) 심사 절차



- »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 심사결과: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안전은 권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안전을 기본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사업주

안전은 선택이나 배려가 아닌
보장해야 할 의무

▶ 사업주의 안전이행
책임 유도

노동자

안전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누릴 기본 인권

▶ 노동자의
안전권리 보장

일반국민

안전은 모든 국민이 참여를
통해 완성하는 문화

▶ 국민들의 관심과
안전 참여 유도

2019-전문기술-87



안전은 권리입니다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안내

공정안전관리제도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제도란?

제출 대상·
시기·서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 제도

·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미제출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 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 시기: 착공일 30일 전

» 설치·이전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제출 서류: 공정안전보고서 2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2호 별지 1호 서식)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관련 법령,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집 등 제공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2016. 2. 17.부터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5,000
2	인화성 액체**	5,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4	포스겐	75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6	암모니아	200,000
7	염소	20,000
8	이산화황	250,000
9	삼산화황	75,000
10	이황화탄소	5,000
11	시아나화수소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4	황화수소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18	수소	50,000
19	산화에틸렌	10,000
20	포스핀	50
21	실란(Silane)	5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6	클로로술포산	500,000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27	브롬화수소	2,500
28	삼염화인	750,000
29	염화 벤질	750,000
30	이산화염소	500
31	염화 티오닐	150
32	브롬	100,000
33	일산화질소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36	삼불화 붕소	150
37	니트로아닐린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39	불소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48	불산(중량 1% 이상)	1,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업종	업종분류코드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공정안전
보고서
이행 제도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8항~제10항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작업위험성평가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변경요소 관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